

의 안 번 호	2004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7.(월)

2. 제안설명 요지(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각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의 기능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와 일부 중복되어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정리하고,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지역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지역축제의 정의
 - 구청장은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해야 함
- 축제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제척, 해촉(제4조~제8조)
 -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 운영 가능
 -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축제의 결산 및 평가, 기타 필요한 사항 수행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2회 연임가능), 해촉사유 발생시 해촉 가능
-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 의결에서 제척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0조)
- 사무국의 설치, 공무원의 파견, 간사(안 제11조~제13조)
 -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함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 가능
 - 간사는 지역축제별 담당계장, 사무국 설치 시 사무국 직원
- 축제의 위탁 등, 예산의 지원 등, 이용료 징수(안 제14조~제16조)
 -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대행 가능
 - 축제 예산, 추진위원회 운영 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 지원
 -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 징수 대상, 금액은 구청장이 정함

다. 근거법규

- 「문화기본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각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사항

○ 수정이유

- 제4조 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개정안)	수 정 안
<p>제4조(축제추진위원회 <u>기능</u>)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u>육성·지원하기 위한</u> <u>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u>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u></p>	<p>제4조(축제추진위원회 <u>설치 및 기능</u>)</p> <p>① ----- <u>심의·육성·지원하기 위한</u> ----- ----- ----- -----</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u></p> <p>1 ~ 2. (원안과 같음)</p> <p>3. <u>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u></p>

근 거 법 규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 · 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 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 보호 ·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 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 진하여야 한다.